

가정폭력 사례를 통한 예방지침서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목 차

- I.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둡시다. / 03
- II.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 05
- III. 우리나라의 실태를 알아봅시다. / 07
- IV. 가정폭력 이렇게 대처해 봅시다. / 09

● 부록

- 가정폭력방지법이란? / 19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 22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 23
-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 24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 26

I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 가정폭력은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누구에게

- 부부폭력 -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대부분)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인 남편도 해당되나요?

☞ 네, 물론입니다. 이혼으로 이미 헤어졌던 전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
- 계부모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어서의 폭력

장성한 오빠가 함께 살고 있는데 걸핏하면 돈 달라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구타까지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 네, 물론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친족관계도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어떻게

- 신체적으로 → 물건을 집어던진다.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는다. 손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때린다. 목을 조른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다. 허리띠, 몽둥이로 때린다. 사정없이 마구 때린다.
- 정서적으로 →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 때리려고 위협한다. 물건을 파손한다.

욕쟁이 남편은 말끝마다 욕설이다. 사람들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나소심 아내를 무시한다.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친정에서 뭘 배웠느냐! 한시도 내 잔소리를 안들으면 넌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무시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인가 싶다.

- 경제적으로 →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다.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한다.

왕소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내는 것은 마치 거지가 구걸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치사해서 정말 안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어린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죽고만 싶다. 집구석에서 먹고 놀면서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다며 무시하고 지출한 돈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한다.

- 성적으로 →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한다.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한다.

변강쇠 남편은 자신이 원할 때면 시도 때도 없이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 때때로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밤늦도록 야한 동영상 보고 나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은 실컷 때려놓고 관계를 강제로 하는 행위이다. 내가 버려지가 된 느낌이다.

- 방임으로 →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 위험상황(병원에 가야할 일)에 방치한다.

아파서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해도 무시해 버리고 밖에서 무슨 생활을 하는지 말 한마디 없이 외박을 하고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면 폭력이 시작 된다. 아이들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하숙집 드나들 듯 필요에 따라 집을 드나든다.

- 통제적으로 →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한다.

나형사 남편은 내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마치 형사가 범인 추적하듯이 내 행적에 대해 모든 것을 추적한다.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정식구들조차 못 만나게 한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은 걸핏하면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해서 의처증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II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 40대 가장 한주머씨는 말다툼을 할 때마다 걸핏하면 아내인 가여린씨에게 주먹을 휘두른다. 이유는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가여린씨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라치면 말대꾸 한다며 화를 내며 폭력을 가한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가여린씨가 화 나게 만들었으므로 폭력의 이유조차 아내탓이다.

▶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매 맞을 짓은 없습니다.

- 처음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고 얼마간은 잘해 주기도 했다. 가여린씨도 신혼초에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화도 내보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각서도 받아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폭력이 더 잦아지고 점점 강도가 세어졌다. 이젠 눈빛만 봐도 섬뜩할 정도로 공포스러워져서 말대꾸는커녕 화를 내는 것 같으면 아예 아내 스스로가 한주머씨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한다. 큰 소리만 내도, 손만 올려도, 맞는게 두렵고 특히 아이들 앞에서 맞는 것은 더 치욕스러웠다.

▶ **폭력이 동반되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입니다.**

근원적으로 폭력이 근절되지 않으면 폭력은 주기적이고 반복되면서 폭력의 강도도 세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저절로 폭력의 행동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남성우월적인 사고방식은 비단 아내 가여린씨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고 무조건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하여 만약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아이들 역시도 폭력을 비켜 갈 수는 없다. 가뜩이나 사춘기에 있는 아들의 반항이

심상치 않아 가여린씨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 내자식 내 마음대로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부모의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가정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결혼생활을 참고 참아왔으나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이 힘든 고통을 참아왔는지 억울해지고 절대로 변화할 것 같지 않은 남편의 태도에 절망하고 있을 때 가여린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알리는 일이 수치스럽고 창피하니까 외부에 알려서는 않된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이웃과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제지하여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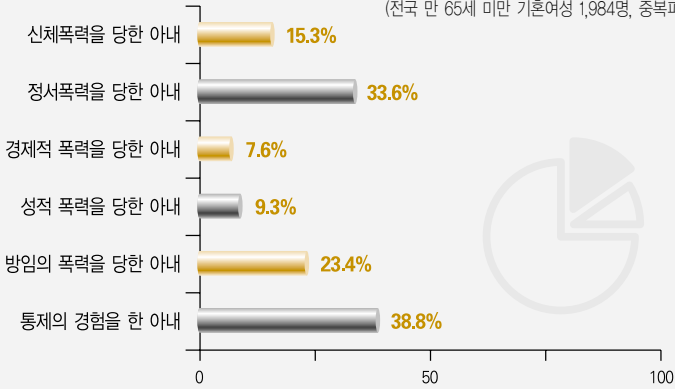
III

우리나라의 실태를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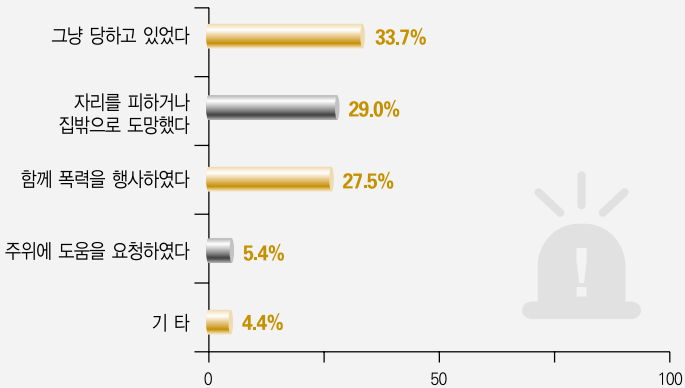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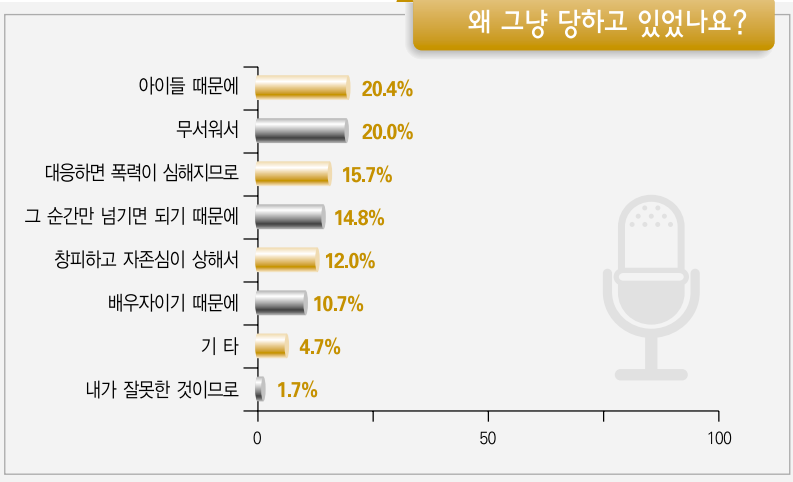
(전국 만 65세 미만 기혼여성 1,984명, 중복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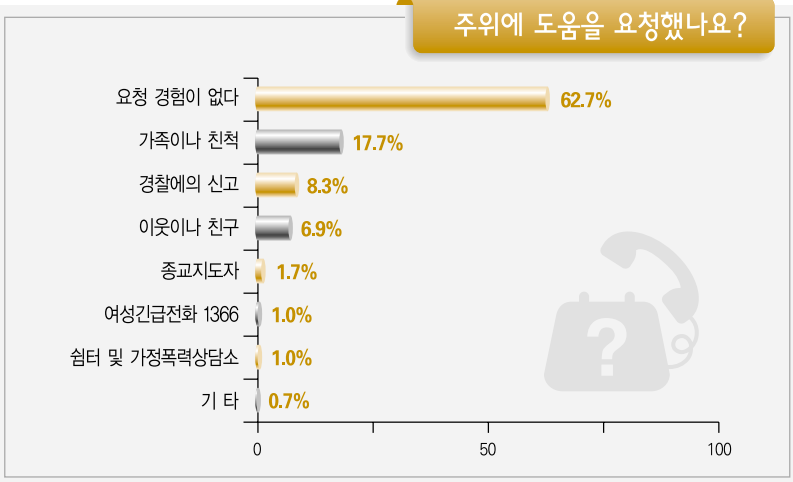
어떻게 대처했나요?



왜 그냥 당하고 있었나요?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나요?



▶ 이젠 알아둡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 ☎ 112 (가정폭력신고 고소접수, 수사, 응급조치 등)
- ☎ 1366 (초기 위기상담, 긴급피난처, 현장상담원 출동)
- ☎ 119 (의료지원)

※ 출처 : 2010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IV 가정폭력 이렇게 대처해 봅시다



가정폭력을 신고해 보셨나요?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아내(재혼) 30대, 남편(초혼) 30대, 아들(6세:전남편의 자), 딸(4세)
- **상담내용**

내담자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으로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 결혼을 하였다. 부부관계는 원만한 편이었지만 결혼 초 재혼녀란 사실로 시댁과 마찰을 일으켰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시댁의 대소사에 경제적인 지원과 무리한 책임을 져야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원만했던 부부관계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남편과 심한 말다툼 끝에 남편의 폭력이 발생했고 순종적이고 착한 남편은 1년에 1~2차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자신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는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용기를 내어 1366에 전화를 했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남편의 폭력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1366과 상담 후 인지하고 진심으로 남편을 위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폭력에 대한 바른 대처 및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하며 또한 남편에게 경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치 및 결과

- 피해자인 아내와 행위자인 남편 모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담을 진행함
- 아내는 자존감 향상, 남편은 폭력행동 교정을 통한 폭력재발방지 및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함
- 긍정적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지속상담이 진행됨

지원체계

- 1366
- 경찰서
- 가정폭력상담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남편을 전과자로 만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집안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명령에 절대 복종만이 살길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아내(초혼) 37세, 남편(초혼) 40세, 딸(11세)
- 상담내용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하며 성장한 아내는 친정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는 남편을 만나 자신이 사랑으로 감싸면 치유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귀가하여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 폭력을 일삼고, 돈 관리를 아내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하여 아내는 가정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단돈 1,000원도 남편의 허락 하에 써야 하고, 친구들은 물론, 친정식구도 만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여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다. 한마디로 남편은 폭군 그 자체이자 법이었다. 또한 남편은 자신의 말에 절대복종하라며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길이라며, 만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때려야 말을 듣는다며 폭력을 행사 하여 기절한 적이 수차례 있었다. 딸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하루에 영어단어 수백개씩 외우라고 강요하여 외우지 못했을 경우 폭력을 가했고, 컴퓨터를 한다고, TV를 본다고 도구(몽둥이, 망치, 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아닌 폭력을 행사하였다. 남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폭력을 한다며 폭력의 원인이 모두 아내와 딸에게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였다.

조치 및 결과

- 1366센터에 긴급입소, 현장상담원이 동행하여 의료 지원(외상치료)과 법률자문을 지원함
- 딸의 학교 담임교사에게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조치 중요성을 알리고 결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및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남편은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가권유 및 프로그램 정보안내

지원체계

- 1366
- 경찰서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보호시설

“한가정의 가장이 내 식구를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산물입니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피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 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죠?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아내(초혼) 40대, 남편(초혼) 40대, 아들(대학생), 아들(고등학생)

• 상담내용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활동에 통제가 심해지고 주변사람들과 왕래가 끊어졌으며 남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폭력이 반복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는 이혼을 해서 해결된다면 이혼이라도 하고 싶는데 아마도 남편은 지구 끝까지 따라올 것 같아 이혼도 못한다며 푸념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며 이해했는데 이전 남편과 동행이 아닌 이상에는 외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남자 라면 친인척, 이웃사람 상관없이 관계를 의심하고 오해를 해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무조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고 조금 이라도 어긋나면 주먹이 날라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그것이 또 빌미가 되어 발목을 잡는다.

조치 및 결과

- 남편의 통제로 외출이 어려운 아내를 위해 1366 현장상담원이 출동. 상담을 통해 남편의 폭력원인(열등감과 의사소통의 부재)을 탐색, 문제해결을 위한 계기마련
- 남편의 폭력 재발생시 경찰신고 등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와 1366긴급피난처와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정보안내
- 지속상담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연계(폭력의 원인 탐색, 자기이해, 의사소통훈련 등)

지원체계

- 1366
- 건강가정지원센터

배우자에 대한 질투나 소유욕이 요인이 되는 의처증의 문제는 마음 속 깊이 아내가 날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폭력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이 끈기와 애정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원하는 답 보다는 단호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요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아내(초혼) 40대, 남편(초혼) 50대, 아들, 딸(20대)
- **상담내용**

결혼생활 24년차인 아내는 무능력한 남편 대신 생활전선에 나가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자신이 내키면 노동일을 하다가 내키지 않으면 몇날 며칠을 술로 시간을 보냈다. 밤이면 밤마다 술에 중독되어 있는 남편은 폭력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결혼생활 내내 아내를 힘들게 했었다. 아내는 힘들게 하루 일을 마치고 오는데 조금이라도 밥상이 늦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상한 트집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다음 날은 어김없이 술을 먹으면 개가 되니까 건드리지 말고 비위를 잘 맞추라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댄다. 폭력에 무방비한 상태의 아내는 속절없이 남편에게 맞고 살 수 밖에 없었고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젠 아이들도 다 컸고 무엇보다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황폐해져간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마주할 때면 남편을 어떻게 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든다며 남편과 분리되어 쉴 수 있는 곳으로 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조치 및 결과

- 경찰연계로 1366긴급피난처에 입소. 심리적 안정과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무기력해진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상담지원
- 이혼결정 전에 지역 내 알코올상담센터와 알코올 전문병원에 상담과 치료연계
- 현재 남편은 알코올치료를 위해 입원. 가족은 술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평온의 상태에 있음

지원체계

- 1366
- 알코올상담센터, 알코올치료를 위한 전문병원
- 가정폭력상담소

술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폭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술을 핑계로 한 폭력을 허용하기보다 중독이 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알코올중독은 자신뿐 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술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파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아내(초혼) 50대, 남편(재혼) 50대, 딸(전처의 자, 25세), 아들(15세)
- **상담내용**

늦은 나이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였는데 신혼의 단꿈도 잠시, 사소한 의견차이가 있을 때마다 손이 먼저 올라가는 남편을 보면서 절망하였다. 전처와 폭력으로 이혼했음을 꼼꼼히 살펴보지도 못하고 결혼했는데 시댁의 상황 또한 미처 알지 못했다. 시아버지의 폭력으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버렸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과 분리되어서 혼자 살아온 남편은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던 것이다. 감정이 총동적이어서 기분이 좋다가도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항상 불안하고 때때로 아이들한테 폭력을 행사할 때 보면 마치 분풀이 하는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

조치 및 결과

- 남편에 대한 절망감으로 이혼 결정. 아내의 욕구는 이혼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의 지원, 기관의 개입으로 사회적 안정망 확보와 남편의 행동변화를 위한 교정치료 연계
- 남편의 입장에서 또 다시 실패라는 두려움으로 상담에 대한 제안 수용. 전문상담기관의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폭력에 대한 책임수용, 비폭력 기술 습득)에 참가. 변화를 경험 중임

지원체계

- 1366
- 경찰서
- 가정폭력상담소

성장기에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학습된 폭력을 성인이 되어서 그대로 답습하여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자신도 어린 시절 폭력피해자이기도 했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 모델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중독되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보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아내(36세), 전 남편(40세), 아들(8세), 아들(5세)
- 상담내용

병원에 입원한 내담자가 이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의뢰하였다. 전 남편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취직을 하지 않고 놀면서 폭음을 일삼고 음주 후에는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혼 후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수시로 찾아와 약 3년을 사실혼관계로 지냈는데 과거의 버릇은 여전하여 수급비가 나오는 통장까지 전 남편이 관리를 하면서 여전히 돈을 갈취하고 아이들에게도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이혼을 했지만, 남편은 아직도 아내와 아이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 당당하게 자신 마음대로 통제하고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혼을 하면 벗어날 줄 알았는데 지속적인 폭력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폭력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위기개입이 시작되었다. “바보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늘 하던 남편의 말이다.

조치 및 결과

- 경찰에 신고 후 접근금지 신청, 긴급피난처에 입소 해서 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와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조치
- 내담자의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내담자 상황 고지 후 안전망을 구축, 심리·정서적 지원과 아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우려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연계조치
- 공권력의 개입 후 전 남편의 태도변화(가정폭력을 범죄로 다루는 것에 대한 인식, 폭력 중단에 대한 각서)

지원체계

- 1366
- 경찰서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위기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많은 여성들이 잘 모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폭력의 고리는 이혼 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대처 방법이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말이 안통해서 무서워요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아내(베트남, 20세), 남편(42세)
- 상담내용

국제결혼으로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한지 1년 3개월차인 이주여성이 경찰에 연계되어 상담의뢰된 사례로 결혼 두달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수차례 이혼을 생각해 보았지만, 일단은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아 자신의 문제를 상의할 사람도 없고 아는 자국의 친구 도움을 받으려 해도 서로 여의치 않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숨겨두고 집을 나가면 당장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출국 당하게 된다고 협박하고 이혼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면 비자 연장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힘들게 하였다.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해주었는데도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꿈쩍 못하게 하니 창살없는 감옥이 따로 없다며 힘들어 하고 폭력을 당하고도 언어가 소통이 안되니 남편이 장황하게 이야기 하면 주변사람들이 남편 말만을 믿는 것 같아 더 불안하고 무섭다.

조치 및 결과

- 1366에 연계 후 긴급피난처에 입소, 일과시간이 끝난 밤 시간대이어서 이주여성긴급전화의 통역 서비스로 자국민 상담원과 연계, 피해자 욕구파악 (이혼보다 남편과의 관계개선, 원만한 부부생활을 통한 우리나라의 생활적응)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연계, 그곳에서 보호 시설과 협조하여 남편 상담에 개입

지원체계

- 1366
- 경찰서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해지고 가정폭력 실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기시 위기상담과 체류, 국적취득,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법률정보 안내 등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기관 및 보호 시설이 도움을 드립니다.

무서울 것 없는 꼬마 무법자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아내(초혼) 40대, 남편(초혼) 40대, 아들(9세), 딸(8세), 딸(7세)
- 상담내용

결혼 9년차, 남편의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책임져 온 아내는 자신과의 부부 갈등보다 남편의 자녀에 대한 폭력문제로 3년 전부터 상담을 해왔다. 큰 아들이 돌이 되기 전부터 운다고 따귀를 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대처로 욕설과 함께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다. 아내가 말리면 말렸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더 큰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지속적인 폭력의 결과로 아이는 과잉행동장애 뿐만 아니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은 또 다른 학대의 이유가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에게 학습된 폭력으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은 물론 실제로 칼을 들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 곳에서나 난동을 피우거나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해적 행동을 했다. 점점 난폭해지는 아들의 행동으로 내담자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할지 몰라 상담을 의뢰했다.

조치 및 결과

- 1366에 의뢰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족 개입, 어머니와 아이들을 아버지로부터 분리해서 심리치료 병행하기로 결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버지와 부모상담 진행하고 아버지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가족이 합치기로 함
- 보호시설과 연계된 정신병원에서의 심리치료 (어머니의 양육훈련, 아들 뿐만 아니라 두 딸들에 대한 심리치료 병행)

지원체계

- 1366
-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자보호시설
- 정신병원

가정폭력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도 포함됩니다.

자녀에 대한 체벌은 교정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을 주기보다 자녀와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이 통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에요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내담자(초혼) 80대, 당뇨와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 아들(50대), 며느리(50대), 딸(40대)

• 상담내용

딸이 어머니의 문제로 상담을 했는데 최근 들어 어머니가 식사도 잘 못하시고 매사에 의욕이 없이 죽겠다고만 하신다며 상담을 의뢰하였는데 이유는 같이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언어 및 정서적인 학대로 하루하루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다. 아들은 아예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서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어쩌다 마주쳐도 소 닭 보듯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며느리는 제때 밥도 차려주지 않고 귀찮아하며 집안일을 할 때면 아예 노골적으로 투덜대며 마치 무위도식하는 노인 취급을 했다. 며느리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가 혹시 자신이 스스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해서 죽고싶은 심정이라고 신세한탄을 했다. 딸이 오빠에게 여러 번 어머니의 호소를 전달했으나 집안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만약 간섭할거면 차라리 어머니를 모셔가라며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오히려 억지를 부렸다. 어머니는 차라리 방을 따로 얻어서 혼자 사는 편이 더 낫겠다며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하였다.

조치 및 결과

- 딸의 상담의뢰로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지속상담 진행(이웃을 통해 상세 정보취합 후 당사자 상담 시도, 부양자로서의 스트레스 및 어머니에 대한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을 표현기법을 통해 표출)

지원체계

- 1366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가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 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폭력의 행위자가 대부분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폭력의 대상자보다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웃의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상담 사례

- **가족관계** : 아내(초혼) 50대, 남편(초혼) 50대, 딸(20대), 딸(20대), 아들(10대)
- **상담내용**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전화했다며 남자인데 상담이 가능하겠냐며 조심스럽게 전화상담을 의뢰했다. 자신은 평범한 가장이며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내의 심한 언어폭력과 때때로 폭발하는 분노로 인한 폭력을 어떻게 감당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다. 화식이나 친구모임 등 귀가 시간이 늦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쫓돌릴 때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무가내식의 고향과 욕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달려들어 손톱으로 잡히는 대로 긁어놓거나 물어 뜯으려 한다. 그러다 보면 제지하려는 자신과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아내가 감정을 폭발시킬 때면 그 힘을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회사로 전화하거나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자신의 험담을 해대는 통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신이 법에 호소하거나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오죽이 못났으면.. 맞고 사느냐. 설마 남잔데 힘으로 당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뭔가 큰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까 무서워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남성이란 이유로 자신은 피해자 취급을 받지 못한다며 호소했다.

조치 및 결과

- 1366에서 경청과 공감을 통해 1차 초기상담을 함
- 앞으로 반복되는 부부싸움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관계개선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체계

- 1366
- 전문상담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폭력의 피해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남성성에 의한 여성폭력이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생명의 위협정도에 이르는 남성 폭력피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맞는 아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소수의 남편들은 마음 놓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곳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 부 록 <<<<<

가정폭력방지법이란?

Q

우리나라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입니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은 집안일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가정 내 폭력문제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인 결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심각한 가정해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법을 만들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응급조치로써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 1366이나 상담소 등으로 연계될 수 있고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한 행위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A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및 그 기관장입니다.

Q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 전과자가 되나요?

A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기보다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일정기간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을 교정하여 가정의 회복을 돕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임시조치,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가정폭력을 신고를 했는데 수사기간 동안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로는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족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보호관찰(6개월 이내),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6개월 이내) 등이 있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면 대부분 친정이나 가까운 친구, 아니면 썬질방 등을 가기 마련인데 만약에 동반 자녀라도 있다면 서로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보호시설에는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요? ○○○

A

종류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설,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 범위에서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등이 있습니다.

Q

폭력피해로 집을 나온 경우 자녀가 있다면 전학은 가능한가요? ○○○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자녀를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입학시킬 경우 입학할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이를 승낙하여 교육장에게 당해 아동의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보호와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11. 6. 29일 의결되어, '11. 10. 26일부터 시행됩니다.

I.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 언제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누가 : 사법경찰관(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 내용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포함)
- 기간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전 까지

II.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

- 언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신청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원에 신청)
- 누가 : 법원이 명령
- 내용 :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포함),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 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1.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화 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대화나누기)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고 칭찬 한마디의 기적을 만듭시다.
4. 남이 폭력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합시다.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경찰은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권리

1. 피해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을 권리
1. 구두로 고소할 경우도 사건이 접수되고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
1. 직업, 학벌, 나이, 이전의 사회적 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1.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받을 권리
1. 피해자로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1. 가해자와 분리되어 수사 받을 권리
1. 가해자와의 대질심문을 최소한으로 요구할 권리
1.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경우 상식적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입장에서 수사 받을 권리
1.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이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권리
1. 남편이나 아버지를 신고했다고 비난받지 않을 권리
1.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 병원 등을 안내 받고 그러한 기관으로 이송 받을 수 있는 권리
1. 가정폭력특례법에 입각해 임시조치 등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1.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이 없고 올바른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 받을 권리
1.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 1. 모든 치료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 1.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 1.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권리
- 1. 가정폭력 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를 발부 받을 권리
- 1.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 받을 권리

일상적 권리

- 1.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 1. 피해상황에 대해 피해자로서 대우받을 권리
- 1. 폭력을 행하는 배우자와 가족을 법적으로 고소할 권리
- 1.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다고 비난당하지 않을 권리
- 1. 이혼녀라고 비난받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
- 1. 한 부모 가족의 자녀라고 비난받지 않을 권리
- 1.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을 표현할 권리
-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 받을 권리
- 1.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1.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 1.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 1.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행복해 질 권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기 관 명	전화번호	지 원 내 용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휴대폰) 지역번호 +1366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계(상담소, 보호시설, 의료 및 법률기관), 긴급피난처 제공, 현장상담서비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자국어로 상담 및 통역서비스
다누리콜센터	1577-5432	이주여성 종합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국번없이 1388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일시보호소 제공, 청소년동반자 상담서비스
경찰청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학교·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수사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법률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가정폭력 피해여성 법률구조
112	국번없이 112	가정폭력신고 및 고소접수, 수사
119	국번없이 119	의료지원



가정폭력 사례를 통한 예방지침서

▶ 2011년 9월 발행

▶ 발행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Tel. 02) 2075-8794~5 Fax. 02) 2075-4793

▶ 인쇄처 : 중앙기획·중앙인쇄사

Tel. 02) 736-2866~7 Fax. 02) 739-8249



가정폭력 사례를 통한 예방지침서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